

위원회설치·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·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적용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학교법인 가천학원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3조(설치) 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목적, 조직,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처에 요청하여야 한다.

②기획처장은 위원회설치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③위원회설치의 승인을 얻은 부서장은 제규정관리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원회에 관한 규정입안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조직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,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은 당연직의 사유가 소멸함과 동시에 위원을 면한다.

제6조(소집과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에 정함이 있는 때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3. 소관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때

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고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사항을 소관부서장에게 보

6-1-1~2 제6편 위원회

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해산) ①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기한부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가천학원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,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